

문서번호	저출산대책담당관-114489	시 민			
결재일자	2011. 12. 30.	주무관	다문화가족팀장	저출산대책담당관	여성가족정책관
공개여부	대시민공개	박경길	이영필	윤기환	12/30 조현옥
방침번호					

「서울해비치다문화가족교육센터」의  
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계획

2011. 12

여성가족정책관  
(저출산대책담당관)

# 「서울해비치다문화가족교육센터」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계획

급증하는 다문화자녀 및 중도입국자녀의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, 이민자의 생활정착 지원 등을 위하여 (구)서울의료원내 설치·운영중인 「서울해비치다문화가족교육센터」에 대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하고자 함

## I 센터개요 및 추진경과

### ■ 센터 개요

- 센터명 : 서울해비치다문화가족교육센터 (센터장 이현정)
- 운영법인 : (사)한국다문화센터 (대표 최흥규)
- 소재지 : (구)서울의료원 (강남구 삼성동 171-1)
- 규모 : 1,124.17㎡(지상3층), 강의실 · 상담실 등 21/ 25실
- 인력 : 총 12명(센터장1, 직원11, ※ 시간강사 18명 별도)
  - 전문인력 : 8명(사회복지사8, 건강가정사2, 보육교사3, 요양보호사1)
- 교육과정 : 3개분야 9개과정 27개반 388명
  - 중도입국/학교이탈 자녀 : 한국어 · 고입검정고시 · 컴퓨터 교육
  - 다문화 자녀 : 특기적성 · 이중언어 교육
  - 성인 이주민 : 취업 · 한국어 · 자격증 · 외국인 유학생 교육 등
    - ※ 교육과정 세부현황 : 첨부1
- 예산 : '12년도 1,524,428천원(운영비 572,886, 사업비 630,956, 임대료 320,586)
  - ※ 세부 현황 : 첨부2
  - 재원
    - 현대차 정몽구 재단(구 해비치사회공헌문화재단) : 운영비사업비(1,203,842천원)
      - ※ 해비치사회공헌문화재단 명칭이 '11. 12. 12자로 '현대차 정몽구 재단'으로 변경
    - 서울시 : 행정재산 사용료(320,586천원)

## ■ 추진경위

- 2010.10.28 해비치재단, (사)한국다문화센터의 센터설치를 위한 서울시 무상장소 제공 요청
  - 2011.05.16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방침 수립(장소제공 및 임대료 지원)
  - 2011.06.08 센터설립을 위한 협약 체결(재원:해비치재단, 운영:(사)한국다문화센터, 장소제공:서울시)
  - 2011.07. 서울의료원 건물 사용제한 해소('공용시설보호지구안'에서의 건축물제한시설에 대한 교육연구시설, 노유자시설, 수련시설 삭제)
  - 2011.08.11 센터설치·운영을 위한 임차료 지원 계획수립(2012예산반영)
  - 2011.08.31 센터 설립을 위한 3자간 상세협약 체결
  - 2011.09.26 용도변경(의료시설→교육연구시설)
  - 2011.10.21 내부리모델링 공사 실시(11.30완료)
    - 센터 리모델링 등 설치비 600,000천원 지원(현대차 정몽구 재단)
  - 2011.10.25 교육생 모집
  - 2011.11.25 (구)서울의료원 행정재산 사용허가승인
  - 2011.12.05 센터 개관 및 교육 개시
- ※ '11. 12. 29. 현재 3개분야 6개과정 18개반 158명 교육과정 운영중

## II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

### ■ 지정 신청

- 신청기관
  - 법인명 : (사) 한국다문화센터(대표 최흥규)
  - 소재지 :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6-3
  - 설립일자 : 2008. 12. 4

- 구비 서류
  - 사업계획서 : 첨부 8
  - 시설 및 인력요건 : 첨부 8
  
- 신청근거
  - 「다문화가족법」 제12조제1항,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
  - 「서울시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1항

## ■ 지정관련 근거(법규)

- 지정기준
  -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12조제1항~3항, 시행령 제12조, 시행규칙 제3조
  - 「서울시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3조제1항

- ① 다문화가족지원 정책 시행 사업계획
- ② 상시활용 별도 사무실, 상담실 및 교육장(공용 가능) 확보
- ③ 전문인력(사회복지사 또는 건강가정사) 1명이상 확보

- 지정절차
  - 「다문화가족법」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, 동법 시행규칙 제4조

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(신청기관) → 심사위원회 구성·심사(서울시)  
→ 지정서 교부(서울시)

- 지정기간 : 3년(2012. 1. 1 ~ 2015. 12. 31)
-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시행령 제12조제4항

## ■ 지정 검토의견

### □ 지정 필요성

- 기 설치·운영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(자치구별 1개소씩 23개소, 중구 및 서초구 제외)는 여성가족부와 서울시의 매칭사업으로 여성가족부 정책 시행 사업 위주로 결혼이민여성 및 다문화 자녀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

- 급증하는 다문화 및 중도입국 자녀의 교육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, 이민자의 조기 생활정착 및 경제적 자립능력 강화 등을 위한 교육센터 설치 필요성이 요청됨에 따라
- '11. 6. 8. 「서울해비치다문화가족교육센터」 설치를 위해 해비치재단의 설치비 및운영비(12억/월1억) 지원, (사)한국다문화센터의 운영, 서울시의 무상장소 제공으로 3자간 협약을 체결하였음

◎ 다문화가족 및 중도입국 현황

- 서울시 결혼이민자 : 49,024명(전국 2위)

※ 전국 결혼이민자 211,458명으로 지역별 분포를 보면, 경기 27.7%(58,509명), 서울 23.2%(49,024명), 인천 6%(12,583명), 경남 5.9%(12,465명), 충남4.9%(10,254명) 순임 - 행정안전부

- 중도입국자녀 : 1,949명(전국 2위)

※ 중도입국자녀는 현황 파악이 어려우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귀화신청한 자료를 근거로 서울시에 34%인 1,949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됨(전국 5,726명, 경기도 1,990명 35.3%) - 내무부 내부자료

□ 지정조건 적합성

-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조건 적합성 여부를 위하여 「서울해비치다문화가족교육센터」의 사업계획, 시설 및 인력 현황을 보면
  - 서울해비치다문화센터의 주요사업은 중도입국(학교이탈) 및 다문화자녀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, 학교적응교육, 고입검정고시 이중언어 및 특기적성 교육 등을 심리상담 서비스와 병행하여 중점적으로 중도입국 및 다문화 자녀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·지원하고
  - 또한 성인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, 취업교육, 자격증 교육을 실시하여 경제적 자립능력 및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
  - 주요 시설은 별도 상시활용이 가능한 사무실, 강의실, 상담실, 강당 등 25실이 구비되어 있음
  - 전문인력(사회복지사 또는 건강가정사)은 총8명(사회복지사8, 건강가정사2, 보육교사3, 영양보호사1)이 확보되어 있음

○ 세부 지정조건 검토

연 번	검토사항	검토내용	검토결과
1	다문화가족지원관련 업무 수행경력	이주민과 다문화 자녀를 위한 교육 및 지원을 목적으로 '08. 12. 4 설립 되어 다문화가정자녀 대학생 멘토링 사업, 다문화 이주민의 생활정착 및 취업교육, 다문화 자녀의 교육사업 등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추진함	다문화가족지원관련 업무수행경력 적정
2	지리적 접근성	강남구 삼성동 (구)서울의료원에 소재 하여 서울시 중심부는 아니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용이함	지리적 접근성 용이
3	전문인력의 확보수준	사회복지사 및 건강가정사 8명의 전 문인력을 확보함	전문인력 확보 적정
4	시설의 적정성	1,124.17㎡내 상시활용이 가능한 사무실, 강의실, 상담실, 강당 등 25실이 구비되어 있음	시설확보 적정
5	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	주요사업내용, 대상별 교육과정, 예산 확보, 홍보 등 사업계획이 구체적·체계 적으로 수립됨	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 높음

※ 지정조건 세부 검토자료 : 첨부4 '사업계획서'

□ 종합의견

-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필요성, 민간자본의 활용, 「서울해비치  
다문화센터」 사업계획, 시설 및 인력확보의 지정조건이 「다문화가족  
지원법」 시행령 제12조에 부합됨
- 따라서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및 「서울시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조례」  
제12조에 의거 동 센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이 적정하다고  
사료됨

■ 지정 조건 : 첨부 6 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조건” 준수

## ■ 향후 계획

- 지정서 교부 : 2012. 12. 30
  - 지정서안 : 첨부 5
- 인터넷 게시 : 2012. 12. 30
  - 서울시 홈페이지(<http://www.seoul.go.kr>), 서울시 한울타리 홈페이지(<http://www.mcfamily.or.kr>)
  - 공고안 : 첨부 7

- 첨부 1. 세부 교육과정 1부.  
2. 세부 예산현황 1부.  
3. 관련법규 1부.  
4. 사업계획서 1부.  
5. 지정서 1부.  
6. 지정조건 1부.  
7. 인터넷 공고안 1부.  
8. 신청서 1부(별첨). 끝.